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호

##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6. 00.

국토교통부장관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

가. 월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월)

품목	고정원가	변동원가	합계
철강재	2,683,489	6,478,243	9,161,732

\* (고정원가항목) 차량감가상각비, 차량구입금융비, 보험료, 번호판이용료, 지입료, 자동차세, 정기검사비, 환경개선부담금, 협회·단체비, 세무신고비, 통신비, 차고지비 및 주차료, 숙박비, 사회보험료, 출퇴근비, 정보망이용료

\*\* (변동원가항목) 주연료비, 통행료,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, 타이어비, 세차비, 기타소모품비

나. 1km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km)

품목	단위 원가
철강재	913

다. 차주 운송정보

(단위 : km/월, 건/월, 일/월)

품목	월 운송거리	월 운송건수	월 운송일수
철강재	10,039	60.7	22.9

2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

가. 월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월)

품목	고정원가	변동원가	합계
1톤 일반형 화물차	787,547	1,723,826	2,511,373
5톤 일반형 화물차	1,406,731	3,885,262	5,291,993
12톤 일반형 화물차	2,151,095	5,114,558	7,265,653
25톤 일반형 화물차	2,590,119	6,165,435	8,755,554

\* (고정원가항목) 차량감가상각비, 차량구입금융비, 보험료, 번호판이용료, 지입료, 자동차세, 정기검사비, 환경개선부담금, 협회·단체비, 세무신고비, 통신비, 차고지비 및 주차료, 숙박비, 사회보험료, 출퇴근비, 정보망이용료

\*\* (변동원가항목) 주연료비, 통행료,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, 타이어비, 세차비, 기타소모품비

나. 1km 단위 차주 원가

(단위 : 원/km)

품목	단위 원가
1톤 일반형 화물차	488
5톤 일반형 화물차	645
12톤 일반형 화물차	779
25톤 일반형 화물차	832

다. 차주 운송정보

(단위 : km/월, 건/월, 일/월)

품목	월 운송거리	월 운송건수	월 운송일수
1톤 일반형 화물차	5,143	55.35	19.61
5톤 일반형 화물차	8,209	46.71	21.28
12톤 일반형 화물차	9,324	37.44	21.04
25톤 일반형 화물차	10,520	31.30	21.05

[별표]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

1.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.
2.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(유압기, 가변기, 윈바디, 내장탑, 냉동·냉장 장치, 리프트 장치 등)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.
3.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<sup>1)</sup>와 유가<sup>2)</sup>를 참고 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 시 협의할 수 있음.
4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.
5.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.

1) (철강재) 3.1km/ℓ, (일반형 화물차) 1톤: 6.3km/ℓ, 5톤: 4.3km/ℓ, 12톤: 3.6km/ℓ, 25톤: 3.3km/ℓ

2) '22.3.16.~'22.6.15 평균 1,950.25원(한국석유공사 공시 국내 주유소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(부가세포함))